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대현

피고F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광진

변론 종결2020. 3. 25.

판결 선고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881,566원, 원고 B에게 377,814원, 원고 D, E에게 각 440,78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 G, H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4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C에게 2,481,566원, 원고 B에게 1,063,528원, 원고 D, E에게 각 1,240,7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중 F의 지분 2분의 1" 삭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6.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2.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7.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3. 22. 원고 C, 피고 명의로 1/2지분씩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A 명의 우체국 예금 345,247,627원이 인출되어 아래와 같이 분배되고 55,247,627원을 피고가 보관하였다. 이중 3,000,000원은 망 I 천도제 비용으로, 2,400,000원은 A 보청기 비용으로 지출되고, 40,321,363원은 A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다. 이를 모두 공제하면 9,526,264원이 남게 된다.

1	F	55,000,000	10,000,000	55,247,627	120,247,627
2	J (딸, 사망)	B (사위)	55,000,000		
3	C (딸)		10,000,000	50,000,000	115,000,000
4	K (아들, 사망)	D (손자)	55,000,000		
5	L (아들, 사망)	상속인 없음			
6	I (아들, 사망)	상속인 없음			
합계	220,000,000	20,000,000	105,247,627	345,247,627	

다. A은 2019. 10. 29. 사망하였고 별지2 기재 상속지분과 피고 14/56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 을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는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16, 을1, 2, 3, 4,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피고와 그 여동생, 모친이 함께 사무소에 찾아 왔었고 경북 문경에 있는 토지를 모친이 두 딸에게 증여를 해 준다고 하여 등기 이전 처리를 해 주었던 바, 증여인인 모친에게 증여의사를 명확히 물어 보았고 수증인들에게도 수증 의사를 물어 정상적으로 증여가 되어 등기이전 처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2, 4면], ② 법무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 명의의 증여계약서[갑16, 2면] 위조 고발 사건에서 피고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2] 등에 비추어,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 성립은 인정되고, A의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갑12, 14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금전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보관한 A의 예금 잔액 9,926,264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구한다.

을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29. A에게 6,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A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비용 3,915,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A의 증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G, H에게 3,526,264원(9,526,264원2) -6,0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881,566원, 원고 B에게 377,814원, G, H에게 각 251,876원, 원고 D, E에게 각 440,78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남인수

별지

1) 원고 G, H과 피고 사이에는 2020. 3. 27.자 이 법원 2018가단156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보청기 구입대금 2,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기재하였으나, 을7의 보청기 구입대금은 2,400,000원이다.